

# 입찰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56
제정일자	2012.07.0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2.07.04.제정 2016.04.01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.) 입찰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거 본교에서 시행하는 공사·제조·구매·용역 등의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공사·제조·구매·용역 등의 사업 계약에 대한 입찰 심의
  - 2. 입찰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 검토
  - 3. 기타 입찰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  - ② 전조 제1호의 입찰 참관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5인을 추첨하여 선정된 5인의 위원이 당해 입찰에 대한 참관을 한다.
 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-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,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한다.
- 제5조(임원 및 직무)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 - ③ 간사는 사무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
- 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년 초에 1회 개최한다.
  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   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· 의



## 입찰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56	
제정일자	2012.07.04.	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	
페이지 수	2/2	

결한다.

- ④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이 날인한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- ② 단,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비밀유지)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이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